

■ 교육

스탠퍼드대, 공학기술 강의에 윤리학 추가



미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는 명문 스탠퍼드대가 공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 논란과 관련, 향후 공학기술 강의에 윤리학을 추가할 방침이다.

270억 달러의 발전기금을 가진 세계 최고 부자 고등교육기관인 스탠퍼드대는 졸업 동문이 구글과 시스코,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세계적 기술기업들을 설립했으며 이들 기업은 아직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있는 대학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4월 '연합뉴스' 가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이사회는 이달 중 회합하고 공학기술 교육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탠퍼드대 내부 보고서는 최근 '윤리와 사회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와 저소득계층의 교육접근 개선책을 건의했으며 이사회는 이의 이행에 따른 자금 조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마크 테시어 라빈 스탠퍼드대 총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윤리와 기술진보의 영향에 대해 숙고 중"이라면서 "교육은 대학이

하고 수습은 사회가 맡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라빈 총장은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과 게시물 조작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7-10년 전에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스탠퍼드대 출신은 아니나 일찍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채택한 것은 스탠퍼드대 출신들이었다. 저커버그는 스탠퍼드대에 기부를 약속한 바 있다.

의학과 경영학의 경우 대학들이 교과과정에 윤리학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학과 컴퓨터과학 분야는 기술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라빈 총장은 대학이 새로운 전략과 관련해 올가을 연구와 교수진 확보를 위한 기금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탠퍼드대는 이미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층을 갖고 있으나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법률 칼럼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1) I-601A waiver

미국에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자로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들어왔지만 스탬프에 찍힌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 또는 미국에 밀입국함으로써 입국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 사람들은 그러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180일)을 넘게 되면 미국을 출국하는 때에 'unlawful presence bar' 라는 범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6개월(180일)을 넘게 되면, 3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면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AOS: Adjustment of Status)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1) 합법적인 미국 입국,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Board of Entry)의 심사(Inspection)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며 2) 미국 입국 후, AOS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해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은 합법적이었으나 그 이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면제조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INA (Immigration and National Act) Section 245(i)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245(i)는 다음주에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2) 245(i)라는 제목으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5(i)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of Inadmissibility)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초청의 I-130의 승인을 미국내에서 받은 후, 이 승인서를 근거로 I-601A 신청을 해서 임시 면제(Provisional Waiver)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I-601A waiver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 8월 말부터 이 I-601A가 확대 조정('Expansion' of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of Inadmissibility)되어 실효 중입니다. 확대된 I-601A waiver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불체자도 포함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가족초청 이민에만 제한 되어있지 않고 모든 이민 비자 category에 적용이 되어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 조치를 통해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한 가족초청의 우선일자(최소 5-6년)를 기다리고 있던 자녀들이 취업이민으로 방향을 바꾸어 I-140승인을 받은 후, I-601A waiver를 통해 1-2년 안에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며,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I-601A 면제조항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혜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들이 있더라도 이 면제조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민권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 가족초청을 하면 Immediate Relative(IR)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